# 사업위원회 규정

제정 1997년 06월 13일 개정 2006년 10월 12일 개정 2019년 09월 21일

## 제 1 조 (명칭)

이 위원회는 사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 라 칭한다.

#### 제 2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부식방식학회(이하 "본회"라고 칭함) 정관 제4조(사업) 및, 제7조(위원회의 설치)에 의거, 본회의 사업 중 학술발표회, 강연회, 강습회, 산학연교류, 국제교류 등 각종 사업의 홍보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3 조 (임무)

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대내·외 학회 홍보를 위한 다방면 콘텐츠 발굴 및 수행
- 2. 학회중심 산학연 기술네트워크에 관한 홍보
- 3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### 제 4 조 (구성)

- 1. 위원회는 사업담당 사업이사 및 약간의 사업위원으로 구성한다.
- 2. 사업담당이사는 사업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

## 제 5 조 (임기)

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#### 제 6 조 (의무와 권한)

- 1. 위원회는 제2조 각항의 사업을 기획, 실시한다.
- 2.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, 이사회에 보고한다.
- 3. 업무 수행에 있어 경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## 제 7 조 (회의)

1.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소집하고,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.

2.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불참시에는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.

부 칙

- 1. (제정)본 규정은 1997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개정)본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- 3. (개정)본 개정규정은 2019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